

(제151회-본 회의 제2차부록)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922
------------	-----

제출년월일 : 2012. 8. .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폐지이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2011.5.23, 시행 2011. 8.23)으로 지방고용직 공무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 2004.11.11.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을 지방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5. 2. 2일 자로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특별 임용하여 고용직 공무원은 없음.

2. 주요내용

- 상위 법률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 불임

4. 참고사항

-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 다. 관련부처 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사항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입법예고 생략
- 마.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1부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1997·7·15]

[조례 제29호]

개정 1998·12·9 조례 제 119 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고용직공무원(이하 "고용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법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된 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임용권자) ①고용직공무원의 임용은 5급이상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②제1항에서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전보·휴직·복직·면직·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제4조 (신규임용) ①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은 별표의 직명에 의한다.

②고용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미리 업무수행능력 기타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년령은 14세이상 20세까지로 한다.

④고용직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전보임용) 고용직공무원은 동일직명에 한하여 전보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권자를 달리 하는 기관으로의 임용은 전·출입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에 전보임용원칙, 전보의 제한 및 전·출입절차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근무상한연령) ①고용직공무원의 직명별 근무상한 연령은 별표와 같다.

②고용직공무원은 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7조 (당연퇴직) 고용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제8조 (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켜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제9조 (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은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은 명할수 있다. <개정 98·12·9>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펼하기 위하여 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의 2 (휴직기간)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신설 98·12·9>

제9조의 3 (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에 종사

(제151회-본회의 제2차부록)

하지 못한다. <신설 98·12·9>

②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98·1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신설 98·12·9>

제10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 고용직공무원이 제8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보건소 및 산하기관 단위로 하나의 정원관리기관(이하 "휴직자 정원관리단위"라 한다)으로 하여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별 정원을 감안하여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조정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후 휴직자 정원관리 단위기관의 고용직공무원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보며, 제2항의 임용권자는 기관간의 현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징계) ①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한다.

② 고용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 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조례의 적용) 이 조례의 적용은 조례시행 당시의 재직중인 지방고용직 공무원에 한한다.

부 칙 <98·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98.12.9>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직명 및 근무상황 연령표

구 분	1종
직 명	지도원
근무상한연령	57세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922)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12. 08. 29(수)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2. 08. 29(수)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12. 09. 07(금)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이상수 행정지원국장)

지방공무원법 개정(2011.5.23, 시행 2011. 8.23)으로 지방고용직 공무원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004.11.11.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을 지방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5. 2. 2일자로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특별 임용하여 고용직 공무원은 없음.

4. 주요내용

상위 법률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지방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5. 검토의견(행정자치전문위원 손중익)

지방공무원법 개정(2011.5.23, 시행 2011. 8. 23)으로 지방고용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수정내용(울산광역시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구의회 의원 2명,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해 수탁기관 적격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p> <p><신 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의회의원 2명, 관계공무원 3명, 당해전문가 6명 이내로 한다.</p>
<p>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은 위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p> <p>④ 해당 수탁기관 선정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p> <p>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구청장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해당 수탁기관 선정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p> <p>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⑦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